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0

발 의 자 : 박수민 · 김선교 · 성일종
서지영 · 이종욱 · 박덕흠
박정훈 · 김민전 · 정연욱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,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,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,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제3항)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제3항 중 “도시의 경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”을 “도시의 경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보호구역등,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행안전구역·고도제한구역·대공방어협조구역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 개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2(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) ① · ② (생략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도시의 경 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</u>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 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	제35조의2(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도시의 경 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,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과 관련된 규제지역(「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보호구역등,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비행안전구 역·고도제한구역·대공방어협 조구역 등 군사기지 또는 군사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) 개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